

청주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나106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전 문

원고, 항소인 A중중

피고, 피항소인 B

변 론 종결 2016. 11. 11.

판결 선고 2017. 1. 13.

제 1 심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6. 1. 13. 선고 2014가단163826 판결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4. 10. 2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지목변경, 농지법의 개정, 기타 종종 명의로 소유권취득이 가능한 사실의 발생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2014. 10. 2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당초의 주위적 청구취지에 정지조건을 명시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일부 변경하였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4. 10. 2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예비적 청구취지를 소유권확인청구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제2항 및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씨 시조 'D'의 25세손 'E'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고, 망 F(이하 'F'이라 한다)은 피고의 부친으로써 원고의 대표자였으며, 피고는 F의 상속인이자 원고의 종손이 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관계

- 1) F 앞으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75. 3. 21. 접수 제17052호로 1972. 3.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94. 5. 27. 접수 제18862호로 1994. 1. 7. 유증을 원인으로 한,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79. 3. 30. 접수 제19765호로 1972. 3.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2) 그 후 위 F의 상속인인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2. 12. 11. 접수 제159160호로 2010. 12. 1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관련 토지들의 소유관계 및 분할관계 등

- 1) 종전의 청주시 흥덕구 G 임야에서 1979. 3. 19. H 토지가 분할되었고, 1981.11. 20. I 토지가 분할되었다. 이 중 위 H 토지는 1999. 5. 26. 별지 목록 제1항 기재토지로 등록전환되었다.
- 2) 종전의 청주시 흥덕구 J 토지에서 1979. 3. 19. K 토지가 분할되었고, 1986. 4.9. L 토지와 M 토지가 각 분할되었으며, 1986. 4. 15. N토지가 분할되었다. 이 중 위O 토지는 P 대 377㎡로 등록전환되었고, 위 K 토지는 1999. 5. 26. 별지 목록 제2항기재 토지로 등록전환되었다.
- 3) 위 Q 토지에서 1967. 12. 20.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가 등록전환되었다.
- 4) 위와 같이 분할된 청주시 흥덕구 G 임야 51,658㎡에 관하여 F 명의로 1979. 3.21.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6. 6. 21. 그 지분 중 일부가 F의 사촌인 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원고는 위 G 임야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2003. 12.3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3. 12. 31. 접수 제97592호로 공유지분 전체의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쳤다.
- 5) 청주시 흥덕구 S 임야 6,149㎡에 관하여 F 명의로 1979. 3. 21.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원고는 위 S 임야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2003. 12. 3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3. 12. 31. 접수 제97592호로 공유지분 전체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6) 청주시 흥덕구 P 대 377㎡에 관하여 F 명의로 1979. 3. 21.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원고는 위 P 토지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2003. 12. 3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3. 12. 31. 접수 제97592호로 공유지분 전체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처분 관계

원고는 2014. 10. 2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법원 2014카합528호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및 가등기이행절차청구권 집행보전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같은 달 28. 그 인용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 10, 12,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로서 원고와 F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경우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조건부 약정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제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종중의 성격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 종중이 E을 공동선조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단체로 2003. 12. 20.경 조직을 정비하고 성문화된 종중규약을 제정하였으며, 2015. 1. 18.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회원자격을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여로 변경하여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 존재하는 단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종중유사단체에 불과하다고 다툰다.

2) 판단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체로서 그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함이 없이 관습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으로, 고유한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종중의 목적, 그 성립과 조직의 경위, 구성원의 범위와 자격 기준, 종중 규약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미 성립된 종중의 종원 중 일부가 주동이 되어 종중 규약을 마련하고 총회를 소집하여 대표자를 선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종중과는 별개의 단체를 구성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는 이전부터 내려오던 종중을 조직화하는 과정상의 착오일 수도 있는 만큼, 이 경우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한 종중 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규약상이와 같은 내용이 종중의 본질에 반한다 하여 바로 그 종중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고 추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34842, 대법원 2005. 7.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9,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원고는 E을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

중 성년이 된 자를 주축으로 하여 공동선조와 그후손들의 분묘 마련, 분묘 관리보호, 종중재산의 관리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2007. 11. 25.경 성문화된 종중규약을 만들고, 회장 등 임원을 선출하며, 회원자격을 정하는 등 조직으로서 형태를 갖춘 점, ③ 피고의 부친인 F은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되어 원고 명의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를 신청하였던 점, 4원고 종중은 위와 같이 등록번호부여신청 후에 충북 청원군 H 외 11필지를 종중재산으로 관리하여 온 점, ⑤ 원고는 2015. 1. 18.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그 종중원 자격을 "A 후손으로서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로 한다."고 변경하여 종원 자격 선정에 문제가 없는 규약을 채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E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중 성년 남녀를 주축으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된 종족 집단으로서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가 F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F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4. 10. 2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는 F 또는 그를 상속한 피고일뿐, 원고와 F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고가 원고에게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어떤 토지가 종중의 소유인데 등기 당시 종원 또는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등기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였을 것과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또는 여러 정황에 미루어 등기 이전부터 종중 소유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간접자료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증명되지 않고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간접자료가 될 만한 정황으로서는, 등기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명의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그들 상호간의 관계, 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명의로 등기를 마치게 된 연유, 종중 소유의 다른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정 또는 등기관계, 토지의 규모 및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 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토지의 관리 상태, 토지에 대한 수익이나 보상금의 수령 및 지출 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 관계, 등기필증의 소지 관계,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67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각증거와 갑 제15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R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의 부친인 F은 1997. 7. 10.경에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되면서 모토지인 충북 청원군 J, K, S, G, H을 종중재산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F은 위 토지들을 최초로 본인과 사촌인 R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분할되기 전의 모토지로부터 분할되고 남은 토지인 G, S토지나 모토지로부터 분할되어 등록전환된 토지 중 원고 명의로 등기가 가능한 토지인P 토지는 2013. 12. 31.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3한편 원고 종중과의 명의신탁관계 외에는 F이 원고에게 위 각 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각 토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명의로 이전된 토지와 모토지가 같지만 지목이 '전'이어서 종중 명의로 등기할 수없었던 토지로 보이는 점, ⑤ 피고는 원고 종중의 2007. 11. 25.자 총회 당시에 원고종중규약의 재산목록에 가필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를 종중재산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당시 위 총회에 참석하였던 F의 사촌인 R은 당심에서 위 종중규약의 재산목록을 만들어 온 T이 실수로 기재를 빠뜨려 종중 회의장에서 이를 수기로 추가 기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점, ⑥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던 U은 위 각 토지를 경작하면서 나오는 소출의 일부로 종중 시제에 필요한 제사음식 등을 준비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토지는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가 그 종중원인 F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 할 것이고, F의 상속인으로서 F의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4. 10. 21.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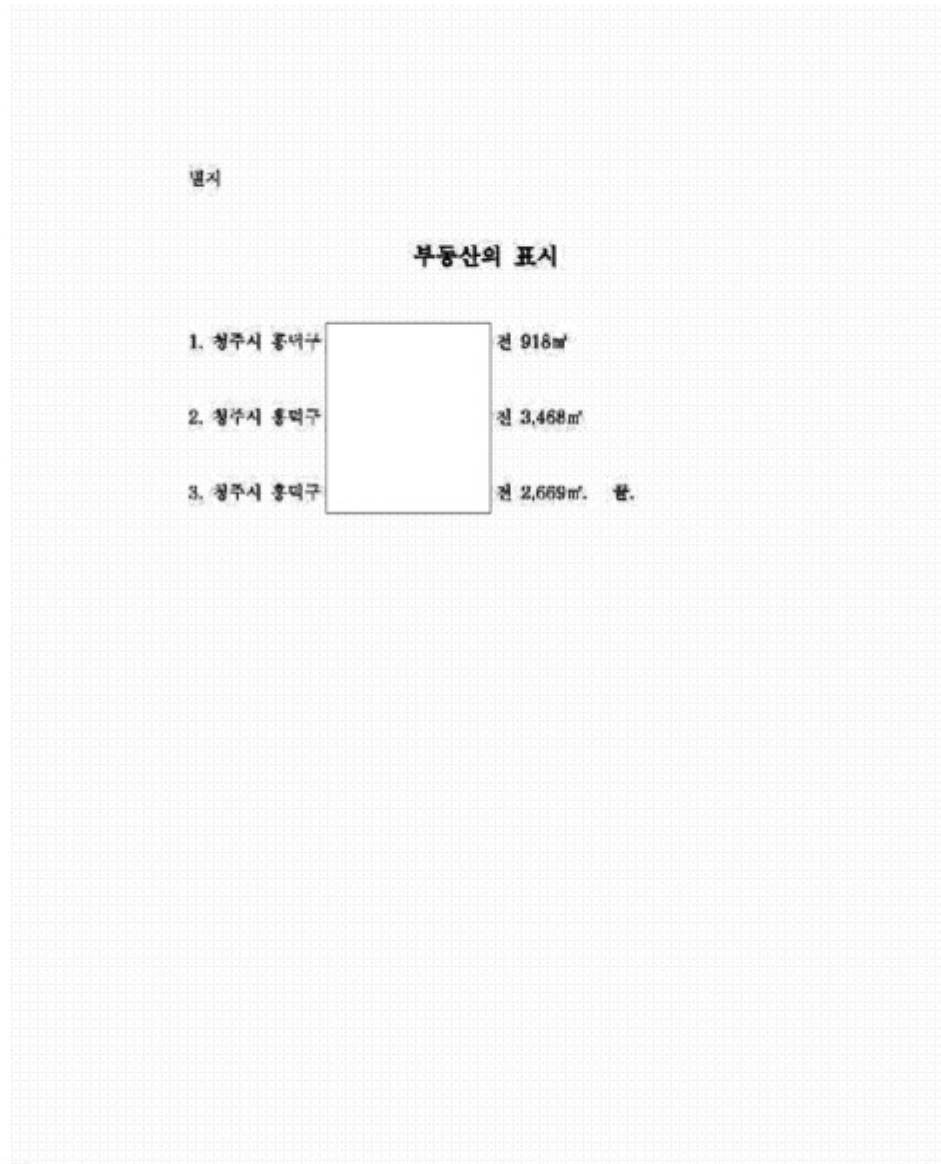
피고는, 설령 원고와 F 또는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종중유사단체에 불과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가 배제되므로, 원고와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고 종중유사단체가 아니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이 부분의 구소인 소유권확인청구의 소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병찬, 판사 송호섭, 판사 김재연



1) 원고는 당심 법원에 2016. 3.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대로 2014. 10. 21.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때 이미 명의신탁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시점에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 해지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